

대의원 선출시 참고 및 주의사항

대의원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각 분회 및 지부의 회원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일반 회원에 비하여 높은 책임성과 준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참고 및 주의사항을 유념하시어 대의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의원 선출 관련 근거 규정

대의원 선출 관련 근거 규정

<정관>

제25조 (대의원 선출 등) ① 대의원은 분회총회(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원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회 임원, 지부의 회장·부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만료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의 수는 250명을 기준 하되 각 지부별 대의원 정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1.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한 분회총회 개최월전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회원수를 대의원수인 250명에서 제8항에 따른 수를 뺀 인원수로 나누어 대의원 1인당 회원 수를 산정하여,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수에 대하여는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를 비교하여 내림차순으로 가산하거나 오름차순으로 감산한다.

2. 제1호에 따른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 대의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 지부의 분회총회에서는 예비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그 수는 대의원 정수의 2분의 1

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한다.

⑦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후단규정과 각호·제6항·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 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은 그 재임기간 중에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⑨ 제1항·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또는 예비대의원의 선출 및 인준을 위한 분회 및 지부의 대의원 또는 전원 총회는 온라인 선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정관>

제56조 (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 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지부는 본회에, 분회는 지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정관시행세칙>

제13조의2(대의원 정원의 배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각 지부별 대의원 정원을 배정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분회별 배정안을 참고하여 각 분회별 대의원정원을 배정한다.(2015. 3. 22. 본조 신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대의원 1인당 회원수에 따라 정관 동조항을 준용하여 각 분회별 대의원 배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의원 1인당 회원수에 미달되는 분회는 인접분회의 회원수를 합한 수의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배정하는 기준과 대의원의 소속분회를 포함하여 배정안을 작성하여야한다.(2015. 3. 22. 본조 신설)

<정관시행세칙>

제13조의3(대의원 선출) ① 정관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대의원은 후보등록 또는 구두호천 및 자천으로 후보자를 정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2015. 3. 22. 본조 신설)(2016.3.27개정)

② 대의원 선거권은 제40조에 따른다.(2015. 3. 22. 본조 신설)

③ 대의원선거의 투표방법은 정관 및 제규칙과 지부회칙 및 분회회칙의 범위

안에서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배정받은 대의원 정원이 4이상인 경우 대의원 정원의 2분의1 기표수 이내에서 1인다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배정받은 대의원이 3인인 경우 1인2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2015. 3. 22. 본조 신설)

④ 분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선거결과를 후보자·분회회원에게 통보·발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 3. 22. 본조 신설)

⑤ 정관 제25조제6항에 의해 선출된 예비대의원이 모두 승계하였음에도 제13조의2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정원에 미달되고 대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이 넘을 때에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대의원과 예비대의원을 6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2015. 3. 22. 본조 신설)

⑥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른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2015. 3. 22. 본조 신설)

2. 대의원 결격 사유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①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근거규정 : 정관 제9조 제3항 제1호
 - ②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근거규정 : 정관 제9조 제3항 제3호
 - ③ 회원 신상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근거규정 : 정관 제9조 제3항 제4호
 - ④ 겸직금지 해당자
 - 근거규정 : 정관 제25조 제1항, 윤리위원회및징계에관한규칙 제26조 제1항
 - 겸직금지 대상 : 중앙회 임원, 지부 회장, 지부 부회장,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 ⑤ 현 회기(2020.3~2023.2) 대의원 중 총회의장의 사전승인 없이 총회에 불참하거나 의장의 성원 점검시 3회 이상 이석한 대의원 및 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위임한 대의원
 - 근거규정 : 정관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 ※ 현 회기(2020.3~2023.2) 대의원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의원이 없음.

■ 대의원 결격 관련 규정

대의원 결격사유 관련 규정

<정관>

제9조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생략)

2. 회원은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4. ~ 5. (생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련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 하며, 대의원 및 임원(산하단체를 포함한다)이 될 자격이 없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전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4. 전항 제3호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정관>

제10조 (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한의사 윤리에 위반한 자

2. 법령이나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본회 및 산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4. 기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② 회원은 누구든지 정관 및 제규칙에 의하거나 제1항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관>

제25조 (대의원 선출 등) ① 대의원은 분회총회(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원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회 임원, 지부의 회장·부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관시행세칙>

제12조 (자격) ① 대의원이 임기중 제13조에 따라 선출된 분회외의 지역으로 개설 또는 근무지를 옮긴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997. 3. 28 개정, 2006. 3. 19 개정)

② 총회의장의 사전승인 없이 총회에 불참하거나 의장의 성원 점검 시 3회 이상 이석한 자는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성원점검 시 15분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위임하는 자도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1997. 3. 28 개정) (1999. 3. 27 본항개정)

③ (1999. 3. 27 삭제)

④ 중앙대의원은 지부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이 150명 미만인 지부는 예외로 한다. (1997. 3. 28 개정)

<윤리위원회및징계에관한규칙>

제26조(겸직금지) ① 위원은 다음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중앙회·지부의 임원, 분회장(2016.3.27.개정)

2. 중앙대의원(2016.3.27.개정)

② 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윤리위원회에서 겸임한 때부터 직위를 박탈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 또는 지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3.27.개정)

Kevoting(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 안내

대의원 선출시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출 또는 인준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회는 정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 운영한 (주)한국전자투표에서 관리하는 Kevoting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 Kevoting 시스템을 이용하고자하는 분회에서는 투표개시일 최소 2일 전까지 이용 신청 및 투표자,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여 Kevoting 시스템에 등록 완료하는 것이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므로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중앙회를 통하여 Kevoting 신청 시, 중앙회와 동일한 기준의 비용(할증요금에서 40% 할인, 또는 투표 이용수수료(선거인당 300원, VAT 제외) 중 낮은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Kevoting 시스템 주요 특징

- 정부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개발, 운영하였던 회사가 관리하기에, 해당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므로 사설 온라인투표시스템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음
- PC를 이용한 인터넷 투표 및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 그리고 스마트폰·휴대폰(피쳐폰) 등의 모바일 기기 등 대부분의 매체를 이용한 투표 가능
-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매체별 투표참여율 등 개표관리 및 통계관리

☐ 접속 주소 : www.kevoting.co.kr

☐ Kevoting 이용 전제조건

- 투표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할 이용기관의 관리자가 선정되어야 함.
- 이용기관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회

원가입 후 이용 신청해야 함

- Kevoting 홈페이지(www.kevoting.co.kr) 접속 ➡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관리자 회원가입’ 클릭

□ 유의사항

- 이용기관 관리자가 Kevoting 시스템을 직접 운영(선거개설, 선거 안내, 투표 독려, 개표 등) 해야하므로 시스템 사용 방법 숙지 필요
- 인터넷 및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확률은 극히 낮지만 불의의 장애 발생 가능성 있음
- 중앙회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앙회 사업자등록번호(204-82-02042)로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이용 비용은 중앙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해당 금액을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Kevoting 측에 중앙회 산하 (지역명)지부임을 이야기해야 함.

kevoting 신청

프로세스 소개

관리자는 계정을 발급받아 선거를 개설하고 관리합니다.

투표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한국전자투표 고객센터 : 1899-1433
 - Kevoting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업무지원
 - 상기 번호를 누른 다음 1번을 누르면 Kevoting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업무지원 직원으로 연결됨
-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 02-2657-5050, 5066, 5058